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0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 윤준병 · 이용선 · 안민석

소병훈 · 장철민 · 양정숙

민형배 · 한병도 · 김성환

양이원영 · 김정호 · 안규백

김수흥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·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.

그런데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·귀촌 가구는 연평균 2% 증가한 반면, 60대 이상 귀농·귀촌 인구는 5.3% 증가하여 청년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의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하였고, 그 결과 통계청「2021 농림어업조사」 중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보면, 전체 221만 5,498명 중 60세 이상은 138만 1,854명으로 62.4%를차지하는 반면, 30대 이하는 31만 1,819명으로 14.1%, 40대는 14만 8,5 50명으로 6.7%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.

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

있다고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·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 이 큰마음을 먹고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.

여기에 농어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귀농어·귀촌이 있어야 하고,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 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함에도 현행법 상 젊은 층을 농어촌 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,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·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, 제16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귀농어 •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후단 중 "사람으로서"를 "사람 또는 귀농어·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으로서"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"을 "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"으로 하고,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귀농어업인 · 귀촌인 정착 | 제7조(귀농어업인 · 귀촌인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) ① ------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 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 -<u>사람 또는 귀농어·귀촌을</u> 희 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망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 -----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제16조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) (생 에 대한 우대지원) ① (현행 제 략)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 <신 설> 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.